

의학전문대학원교원인사에관한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임상의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학교법인가천학원정관, 교원인사규정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의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①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의 논의 및 심의를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에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직무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의학전문대학원장과 교무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①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31~2 제3편 행 정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 3 장 신분보장

제9조(휴직 및 복권) ①휴직을 원하는 교원(휴직을 연장하고자 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은 휴직원을,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복직원을 제출하여 임면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직교원의 재임용, 승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휴직기간 중에 재임용 시기가 도래한 교원은 복직 후 휴직 당시의 잔여 임용기간을 복무 한 후에 재임용 심사를 한다.

2. 휴직기간 중에는 승진할 수 없으며, 복직 후 휴직 당시의 잔여 임용기간을 복무하여야 승진할 수 있다.

③교원의 연구년 휴직과 해외연수에 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임 용

제 1 절 신규임용

제10조(구분 및 자격) ①교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교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5년 이상 의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자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신규교원의 직급별 최소 교육 및 연구경력 연수는 학사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교수: 5년

2. 부교수: 12년

3. 교수: 17년

제11조(교육 및 연구경력 연수의 계산) 교육 및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에 따

라 계산한다.

1. 경력연수는 관계법령과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2.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3.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이 있을 때는 그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제12조(신규임용 등의 방법, 시기)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 ②교원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 ③교원의 신규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본교 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의학전문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로 구성한다. 다만, 기초 및 전공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본교 교원이 아닌자로 한다.

제13조(특별임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임용할 수 있다.

1. 일반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교원을 퇴직 시에 재직할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또는 외국대학에 근무하는 현직 교원을 본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교원이 학기 중에 사망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어 결원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5. 교원으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역할이 기대되는 경우
6. 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특별 임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전공분야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구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학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본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자

③특별채용교원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경력에 관계없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3-2-31~4 제3편 행 정

④특별채용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고, 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 및 면접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임용기간) 교원의 임용기간은 직급에 불구하고 최초 3년으로 한다.

제15조(임용기준) ①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임상의학교원 업적평가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주저자 논문 점수의 합이 SCI급 원저 또는 종설로 400%를 포함하여 60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02.2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임상교육, 연구 및 진료영역에 특별히 필요하여 당해 주임교수와 교육협력 병원장이 추천하는 임상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얻어 신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된 교원은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의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제출서류) ①신규임용 후보자는 본교가 정하는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을 해당기관에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승진임용

제17조(승진시기 및 기준) ①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행한다.

②교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 소요연수(이하 "승진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동일직급 근무경력과 임상교원이 퇴직 후 재차 본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본교의 교육협력병원 및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로 재직할 경우를 1회에 한하여 승진소요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이상

2. 부교수에서 교수 : 6년 이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본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원은 1년 이상 본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승진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④각 직급별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평가규정 별표 3-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교수로 승진은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승진 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승진) ①교원업적과 교육 및 직무에 탁월한 교원은 제17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조교수, 부교수는 각각 3년이 경과한 후 특별승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8.12.)

② (삭제 2014.08.12.)

③진료업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을 위한 공헌이 지대한 교원으로서 협력병원장의 추천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4.08.12.)

제19조(제출서류) 승진 대상자는 본교가 정하는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재 임 용

제20조(재임용의 시기, 기간 등) ①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②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직급에 관계없이 3년으로 한다. 다만, 승진되지 아니한 교원의 동일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연한은 9년으로 한다.

③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로 당연히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⑤재임용 심사기준 결과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비정년트랙 교원과 비전임 교원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보직교원의 재임용) ①본교와 교육협력병원의 주요보직자로 재임한 경우,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직기간은 제외하고 재임용 심사를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요건은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주요보직자는 본교 처장(부처장) 이상,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교육협력병원의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보직 이상을 의미한다. 다만 총장이 지명한 보직자

3-2-31~6 제3편 행 정

및 교육협력병원장이 요청한 협력병원 보직자에 한해 주요보직자로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교육협력병원 보직교원에 대한 종합 평가는 교육협력병원장이 평가한다.

제22조(업적평가 접수) ①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세부 규정은 평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진료업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을 위한 공헌이 지대한 교원으로서 협력병원장의 추천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재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4.08.12.)

제23조(제출서류) 재임용 대상자는 본교가 정하는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소명기회 부여) ①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에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이 세칙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직급 연한을 초과한 교원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재임용 기간(3년)까지를 직급 재직 연한으로 본다.
②이 세칙 시행 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교원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은 2년이며, 이 세칙 시행 이후부터 재임용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이 세칙 시행 이전 재직 중인 교원 중 2015학년도 승진 심사까지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1회에 한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016학년도 승진 심사부터 평가규정 별표 7을 적용한다.
④이 세칙 시행 이전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제17조 4항의 적용은 2017학년도 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8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3-2-31~8 제3편 행 정

(별표1)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연수 환산표

구 분	환산율(%)	비 고
대학병원 근무경력	100	
기초의학전문수련기관 근무경력	100	
전임의 근무경력	100	
박사학위과정 이수경력	100	3년까지만 인정
석사학위과정 이수경력	100	2년까지만 인정
군복무경력	100	3년까지만 인정
본교 교육협력병원 근무경력	100	
전문의료기관 근무경력	80	
해외수련병원 입원환자 진료경력	80	
인턴/레지던트 수련경력	80	
수련병원 근무경력	70	
개원의 경력	50	